

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

재정경제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재정경제부장관

1 서류전형 합격자

가. 합격자 명단

응시 코드	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응시번호	성명	연락처 뒷번호
A	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관리	전산사무관 (일반임기제)	공급-01	장*호	9720
			공급-03	변*정	1858
			공급-04	엄*용	5592
B	대외경제	행정사무관 (일반임기제)	대외-01	이*영	5227
			대외-04	유*민	8713
			대외-06	김*영	1483
			대외-07	류*기	9621

2 면접시험 일정

가. 면접일자 : '26. 7. 21.(화)

채용분야	일 시	장 소
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관리	2026.7.21.(화) 14:00부터	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)
대외경제		

* 시험 당일 **30분 전까지** 정부세종청사 **중앙동 민원동 1층 로비**에 도착

** 출입증 발급 및 신원 확인을 위하여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발급확인서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중 1)을 반드시 지참

나. 면접 당일 제출서류

-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에 대한 아래의 증빙자료를 면접 당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②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 발급) 제출

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제출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
④ 해외 학위 사본만 제출한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

- 졸업증명서가 아닌 학위수여증명서 제출

※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
다. 응시자 유의 사항

- 시험 당일 **30분 전까지** 중앙동 민원동 1층 로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. 집결시간·장소 미준수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※ 면접시험 집결장소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,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집결시간 미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면접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변경 시 별도 통보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발급확인서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중 1)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재정경제부(면접장소) 출입 시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
※ 면접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, 면접시험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시험종료 즉시 면접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(위반 시 불이익 可)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력·학위 검증, 자격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노트북, 녹음기, 스마트워치 등 전자 및 통신기기는 시험중 사용할 수 없으므로 면접대기장에 두고 면접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시간 중 외부인과의 접촉 및 시험 종료 후 대기중인 응시자와의 접촉이 금지되며, 질문내용 등 시험관련 사항의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.

3 면접시험 안내

가. 공통사항

- 개별면접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면접시험 평가요소 : ① 소통·공감 ② 헌신·열정 ③ 창의·혁신 ④ 윤리·책임 ⑤ 직무분야 전문성과 응용능력

4 기타 안내사항

가. 최종합격자 발표

- '26. 8. 4.(화) 예정 /재정경제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
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)
 - ※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나. 면접시험 관련문의

- 재정경제부 인사과(044-215-2255)